

산주·임업인의 소득사업

산림청이 항상 힘이 되도록
함께하겠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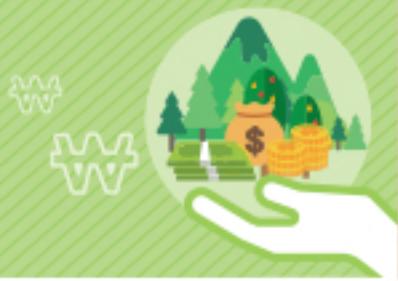
www.forest.go.kr



사유림경영소득 지원제도 안내



산림사업 종합자금지원



산나물, 표고 등 산림소득사업



보험개요

임업인·생산자단체의 산림경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
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·저리로 대출

지원내용

표고버섯, 밤, 대추, 떡은감, 산양삼 등 생산기반 및 가공시설,
전문임업인기반조성, 숲가꾸기, 임도시설, 목재이용·가공시설 등

지원대상

산림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
지원기준

- ▶ 금리 : 고정금리 1.0~3.0%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- ▶ 융자기간 : 5년~35년
- ▶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리와 융자기간이 다르게 적용됨
※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분야별 산림정보 → 통합자료실 → 전자북
"산림사업종합자금"에서 확인할 수 있음

신청절차

- ▶ 응자신청(사업희망자가 직접 산림조합에 신청)
 - 순수응자 : 사업당년도 1월 1일부터 신청
 - 보조수반응자 : 사업예정연도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
- ▶ 대상자 결정
 - 산림조합에서 매월 응자심의회를 거쳐 우선 순위 등 결정·통지
- ▶ 응자금 수령(산림조합이 직접 사업대상자에게 대출)
 - 사업실행 후 소요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응자금 대출에
필요한 서류를 산림조합에 제출한 후 응자금 수령

목적

산나물, 표고, 밤, 대추, 떡은감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
시설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도모

지원내용

- ▶ 산나물, 밤, 대추 등의 관정·관수, 작업로, 보호울타리 등 시설
- ▶ 표고재배시설, 톱밥표고재배시설, 표고생산기반 지원
- ▶ 임산물 지상방제장비, 생산장비 및 시설, 유기질비료 등

지원대상

- ▶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제외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- ▶ 생산자단체(법인) 요건
 - 조합원 농업인이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
 -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, 사업대상은 임산물의
소득원 지원목록으로 선정

지원기준

- ▶ 지원비율 : 국고(20~70%), 융자(20%), 지방비(20%), 자부담
(10~40%)
- ▶ 융자조건 : 연리 2.0% 3년 거치 7년 상환, 변동금리 적용시
1.01%('16.1월 기준)

신청절차

사업희망자는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대상지 시·군·구에 신청

산림복합경영



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



목적

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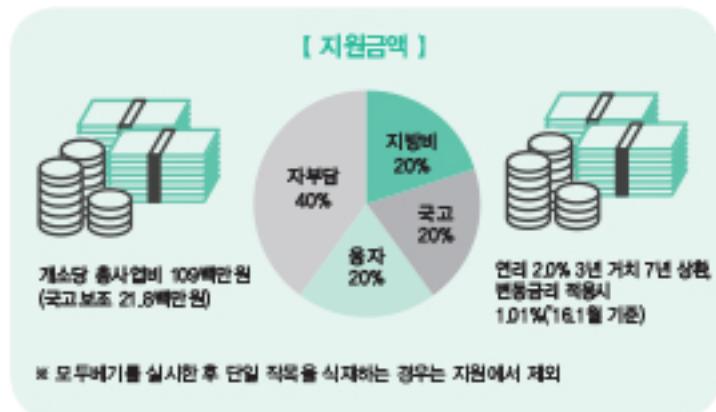
지원내용

- ▶ 조경수, 특용수, 약용·관상용식물, 표고 재배사(표고목 구입비 포함)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
- ▶ 종자채취 및 구입, 산지 묘포장 조성, 임내 정리 및 식재
- ▶ 임간 방목(염소제외),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

지원대상

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임업인

지원기준



신청절차

사업희망자는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대상지 시·군·구에 신청

목적

임산물의 수집·가공 및 유통의 규모화·현대화로 지역별 특화 품목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

지원내용

- ▶ 건축 : 산지종합유통센터, 집하장, 선별장, 저장시설, 창고, 사무실 등
- ▶ 가공장비 : 박피기, 건조기, 절단기 등 가공장비 및 세척실, 가공라인 등
- ▶ 선별·포장 : 선별기, 박스제작기, 봉합기, 자동소포장기, 컨테이너 등
- ▶ 유통장비 : 반차량, 냉동탑차, 지게차, 파렛트 등
- ▶ 위생·판매시설 : 오폐수정화·위생시설 확보·전시·교육장 및 판매장 등
- ▶ ICT융복합 SW :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

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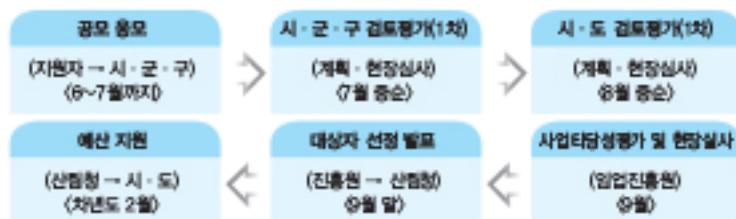
- ▶ 생산자단체(법인) 요건
 - 조합원, 농업인이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
 -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,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
 -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, 운영실적 3년 이상, 출자금 3억 원 이상

지원기준

- ▶ 총사업비 : 개소당 2~20억 원
- ▶ 지원자율 : 국고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

신청절차

사업희망자는 전년도 6~7월까지 시·군·구에 공모신청



특별임산물 품질관리제도



● 품질관리제도란?

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재배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

* 산양삼(山養參)이란 신지에서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삼

● 신청대상

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생산(산양삼의 종자·종묘 생산을 포함)하고자 하는 임업인

* '산양삼'이란 명칭으로 유통·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

● 신청기간

- ▶ 한국임업진흥원 : 생산적합성조사, 생산과정확인, 품질검사
- ▶ 시·군·구청 :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

● 비용지원

- ▶ 생산적합성조사·품질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, 20만원/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(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·군·구에 한함)

● 주요내용

생산적합성조사	산양삼을 생산하려는 자는 식재 전 토양, 종자, 종묘 검사를 전문기관에 신청
생산신고	'생산적합성조사'를 통해 농약 등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신고
생산과정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재배자는 염내 정리, 파종, 제초 등 관리내용을 생산과정기록부에 모두 기록- 재배과정 중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금지- 전문기관은 생산신고일로부터 3년 전후에 재배자를 방문하여 기록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
품질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재배자(수입자)가 산양삼 수확 전 산양삼에 대해 품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신청- 불합격된 산양삼은 폐기처분
품질표시	- 정해진 규격에 따라 생산자 수입정보 및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여 유통 및 판매

대리경영



● 대리경영이란?

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 및 부재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실행하는 임업경영

● 사업내용

- ▶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
- ▶ 조림, 숲가꾸기, 벌채 등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
- ▶ 산림경영관련 기술·정보 등의 제공
- ▶ 보조금의 신청,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등

● 대리경영자

- ▶ 임업인,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- ▶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, 임업분야 대학, 산림 경영법인

● 사업추진 절차



* 상세한 내용은 사업 대상지가 있는 지역 산림조합에서 안내 받을 수 있음

산림경영지도



○ 산림경영지도란?

산림경영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산주, 임업인, 귀농·귀촌인 등에게 임업기술과 정보제공, 현장 산림경영지도 등

● 배치 및 운영

- ▶ 배치 : 산림조합중앙회 및 전국 142개 지역 산림조합
 - ▶ 운영 : 산주, 임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경영 지도

○ 지도분야

- ▶ 산림경영계획, 대리경영, 묘목생산, 조림, 숲가꾸기, 산림조사, 임목생산,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·유통 등 산림사업지도
 - ▶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안내 및 보조사업 신청 등 행정대행

○ 상담전화

산림경영상담을 위해 삼답 전화 운영



농(임)업인 안전재해보험



○ 보험개요

- ▶ 보험명칭 : 농(임)업인 NH안전재해보험
 - ▶ 보상재해 : 신체상해 및 주요 질병
 - ▶ 보험기간 : 1년
 - ▶ 가입대상자 : 만 15~84세 농(임)업인
 -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
 -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, 제10조, 제11조의 농업인
 - 농업경영체(영농조합 등)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
 - ▶ 가입 및 문의 :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생명 콜센터(Tel. 1544-4000)

○ 보험료 지원

- ▶ 지원범위 : 보험료의 50% 정부지원, 지자체별로 추가지원(10~30%)
※ 상시 직장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(보험료 전액 자부담 기입은 가능)

○ 기본형 보험료

구 분	일반인형			장례인형
	1월	2월	3월	
보통료	108,500	135,400	174,000	121,100
정부자원액	54,250	67,700	87,000	60,5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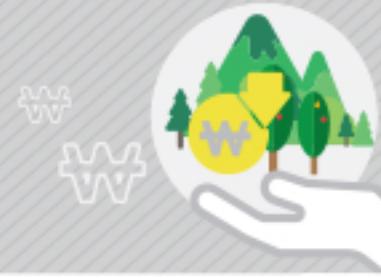
○ 보장내용

급 부	지 금 금 액			
	일반 1월	일반 2월	일반 3월	장예인월
유족급여금	5,000	7,500	12,000	7,500
장례비			100	
고도장해급여금	5,000	7,500	10,000	7,500
재해장해 급여금	5,000만원× 장해지급률	7,500만원× 장해지급률	10,000만원× 장해지급률	-
간병급여금(재해·질병장해), 재활급여금(고도장해)			500	
종업급여금(입원)		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		
재활급여금(재해장해)		500만원 × 장해지급률		-
특장질병 수술급여금/ 특장감염병 진단급여금			(1회당) 30만원	
상해·질병 치료급여금	기본형	재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증 실체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상해·질병치료급여금특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원		

임산물 재해보험



세제 및 보험료 혜택



보험개요

- ▶ 대상품목 : 떨은감, 밤, 대추, 복분자, 표고버섯, 오미자
- ▶ 가입자격 : 일정규모 이상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
- 밤 1㏊, 떨은감/대추/복분자/오미자 0.1㏊, 표고버섯 단동하우스 0.08㏊, 표고버섯 연동하우스 0.04㏊이상
- ▶ 보험기간 : 1년
- ▶ 가입문의 :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
(Tel. 1644-8900)

보험료 지원

- ▶ 지원범위 : 정부 50% 지원, 지자체별로 추가지원(20~30%)
※ 보험료율 및 지자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름

품목별 보장유형

대상품목	가입지역	가입기간	보상자체		자기부담비율
			주계약	특약	
떨은감	전국	2.22~3.25	태풍(강풍), 우박	불/가을 등상해, 집증호우, 나무보상	15%, 20%, 30%형 중 선택
밤/대추	전국	4.4~4.29	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	-	10%, 15%, 20%, 30%, 40%
표고버섯	전국	6.7~7.1	태풍(강풍), 폭설, 집증호우, 침수, 낙뢰, 조수해	화재	보험가입금액의 100% 보장형
복분자 (시범사업)	고창, 정읍, 순창, 합천, 담양	11.1~11.25	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	-	20%, 30%, 40%
오미자 (시범사업)	문경, 상주	11.1~11.25	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	-	20%, 30%, 40%

가입절차 및 보험금 지급

- ▶ 가입절차 : 지역농협에서 보험안내 → 가입신청 → 현지확인 → 허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→ 보험증권 발급
- ▶ 보험금 지급 : 피해 시 지역농협에 신고 → 손해평가 실시 → 보험금 청구서 제출 → 보험금 지급(7일 이내)

소득세

- ▶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하여 10년 이상된 나무를 조림한 사람이 벌채하거나 팔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% 감면
- ▶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하여 5년 이상인 나무를 벌채하거나 팔 때의 소득으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

양도소득세

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10% 감면

상속세

상속하기 2년 전부터 임업(영농)에 종사한 사람이 상속 2년 전부터 임업(영농)에 종사한 18세 이상 사람에게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산림을 상속 할 때 재산가액의 15억원까지 공제

증여세

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산지를 297천㎡ 이내(조림기간 20년 이상은 99만㎡ 이내)에서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10% 감면

취득세

- ▶ 독립가 ·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 · 분할하는 경우 면제
- ▶ 독립가 ·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(99만㎡ 이내) 취득시 50% 감면

재산세 (도시지역 제외)

- ▶ 별도합산과세 :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
- ▶ 분리과세 :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보전산지
- ▶ 비과세 : 산림보호구역, 채종림, 시험림, 백두대간 보호지역

부가가치세

- ▶ 영세율 : 임업용 기자재,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
- ▶ 면제 : 목재펠릿
- ▶ 환급 : 임업용 필름, 파이프, 차광망, 부직포, 양수기 등 기자재

보험료 지원

- ▶ 건강보험료 : 부과점수에 따라 최대 건강보험료의 28% 지원
- ▶ 연금보험료 :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16년 최고 40,950원/월 지원'
※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자침수 중 · 농어업인 건강 · 연금보험료 지원 · 환고